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모로코 국적 난민에 대한 고문 및 자의적 구금에 우려를 표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세계고문방지기구(이하 'OMCT'라 함)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종식시키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각지의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200여 개의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문-SOS 네트워크는 90개국에 걸쳐 고문에 맞서는 가장 큰 국제적 단체입니다. 우리는 여성, 아동, 토착민, 이민자 및 여타 소수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가 법률과 정책을 수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피해자가 정의를 찾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고문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인간 존엄성은 타협 가능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OMCT는 협력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해당 난민은 2021년 6월 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소위 '새우껍기'라고 불리는) 팔과 다리를 뒤에서 함께 묶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된 고문방지협약을 관장하는 고문방지위원회는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함께 몸 뒤에서 묶는 행위를 고문 및 부당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¹ 해당 행위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세 고문(positional torture)' 혹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자세(stress positions)'는 심각한 형태의 구속으로서 그 자체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UN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의 규칙 47은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보호 장구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² 고문방지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구금 시 사용하는 보호 장비의 사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³

¹ 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Uruguay, UN Doc. CAT/C/URY/CO/3, 10 June 2014, para. 13.

² GA,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UN Doc. A/RES/70/175, 8 January 2015, Rule 47.

³ 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AT/C/KOR/CO/3-5, 30 May 2017, para. 21.

고문방지위원회는 “보호장비는 다른 통제 방식이 실패하였을 때 최단 시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에 권고했습니다.⁴

피해자에게 일종의 징계로서 집행된 독방 구금에도 이와 유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의 독방 구금이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고문방지위원회는 “독방 구금에 대한 징계 처벌을 연장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⁵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인권 침해로 규정한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가해자 기소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문 및 다른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기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⁶ 해당 공무원의 조사 기간 동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기간 동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⁷ 동시에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제14조에 따라 “법적 절차에 완전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고문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완전한 재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상황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에 대한 재활은 의료 지원, 심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포함합니다.⁸

우리는 사건 발생 장소이자 가해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해제를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⁹ 이주민에 대한 구금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⁴ Ibid para. 22.

⁵ Ibid para. 24 c).

⁶ 6 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urkey, UN Doc. CAT/C/TUR/CO/4, 2 June 2016, para. 32.

⁷ 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urkmenistan, UN Doc. CAT/C/TKM/CO/2, 23 January 2017, para. 8.

⁸ CAT, General Comment No. 3, UN Doc.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11.

⁹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1 진정 0451000, 3 December 2021.

문제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와 UN 인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구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상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¹⁰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주민의 처우- 특히 장기화된 구금과 구금상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위에서 언급된 고문방지협약 및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최고 기준 유지" 및 "국가 차원에서 국제 인권 기구 조항 이행"과 같이 인권이사회에 자발적으로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고문을 근절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¹¹ 그러므로, 우리는 법무부가 1) 피해자를 석방하고 2)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며 3)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기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안서를 고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을 담아,

Gerald Staberock 사무총장 드림.

¹⁰ Para. 41 b.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KOR/CO/4, 3 December 2015, para. 38.

¹¹ 1 HRC, Note verbal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 Doc. A/70/88, 27 May 2015,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88